

2022년 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

참여자(청년·기업) 추가모집 공고

안성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09. 14.

안 성 시 장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년 09월 14일 (수) ~ 충원시까지 수시모집(선착순)
 - ※ 2022. 09. 14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소급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
- 지원내역
 - 지 원 액 : 청년 1인당 월 임금의 50% (월 1백만원 한도, 2023년 12월까지 지원)
 - 지원조건
 - 2022. 09. 14일 이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사업기간 동안 ‘안성시’ 에 주민등록 유지
 -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 월 급여 200만원 이상 지급 (초과근무수당 불포함)
 - 모집공고일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3개월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소급 지급함
(단, 2022년도는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12월에 3개월분 지급)
 - ※ 금년도 추가모집 선정 인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수가입의무 미적용
 - 지원인원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기준)	지 원 인 원	비 고
10인 이상 ~ 50인 미만	연간 2명 지원	
50인 이상 ~ 100인 미만	연간 4명 지원	
100인 이상	연간 5명 지원	

- 지원절차 : 청년인재 채용 → 사업 참여신청 →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 ※ “청년인재”란 채용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사람으로서 근로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함.

○ 제외대상

【참여기업 제외대상】

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3.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주점업, ③무도유흥주점업, ④기타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⑥무도장운영업)
4.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5.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6. 병·의원, 약국, 준·대형마트, 학원, 숙박·음식업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휴양콘도업체 가능)
7.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8.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9.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10.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11. 공고일 기준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단, 서식 11의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검토 후 선정여부 결정)

【청년인재 제외대상】

1. 취업상태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2.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단, 졸업 예정자는 가능)
3.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청년 (단,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자 및 퇴사 후 1년이 지난 경우 제외)
4. 병역특례자
5. 외국인 (귀화자, 국적취득자 제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청년
7.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8.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및 안성시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 (청사초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기 수혜자 및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9. 법령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사람

② 참여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2. 09. 14.(수) ~ 총원시까지 수시모집(선착순)
- 접수장소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 접수방법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제출
 - 주 소 : 안성시 미양로 847 (도기동)
 - 연락처 : ☎ 070-4261-1907 / 070-4327-6515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고

【 기 업 】

1.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확약서
 5. 근로계약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기업체 자체 서식】
 6. 사업장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8.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청 년 】

1.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확약서
4. 주민등록초본 (※ 참여 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

③ 심사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업 및 청년인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 접수순

○ 선정기준

- 1) 「청년인재 선발 기준 점수표」를 기준으로 상위점수 순서로 기업 선정
- 2) 동점의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기업
 - (2순위) 취업보호.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청년인재 선발 기준 점수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특점	비고
합 계			100		
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		20 (10,0)		-해당법률규정 -참여자 본인 증명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20 (10,0)		-참여자 본인 증명
한부모가족	여, 부		10 (10,0)		-참여자 본인 증명
세대주	여성 세대주, 일반 세대주, 세대원		10 (10,5.0)		-참여자 본인 증명
장기 실업자 및 휴.폐업자 (접수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20 (10,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참여자 본인 증명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10 (10,0)		-참여자 본인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10 (10,0)		-참여자 본인 증명
감점사유 △50점					
동일 유형의 재정일자리 참여자	접수일 기준 3년이내 참여자		△40		
근로능력 미달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10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④ 참여기업의 의무

○ 근로계약 체결

1. 참여기업은 청년인재 선발 대상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

○ 근로조건 및 관리

1.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2. 기업은 시 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함
3.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4. 참여기업은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행정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신규 채용자의 원활한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⑤ 고용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
 - 모집공고일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3개월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소급 지급함.
 - 다만, 2022년도는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12월에 3개월분 지급
 - 지원금 지급 : 월 1회 청구 / 월 1회 지급
- ※ 첫 회 지급은 선정 통보 이후 지급

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건에 한하여 지급기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1개월 이내 중도포기, 지원금 신청 시점 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참여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인재를 고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 외 사항은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문 의 처 :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 김태경 (☎ 070-4261-1907)
윤태호 (☎ 070-4327-6515)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건강보험료, 재산,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복합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가구 해당여부 등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원,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안성시장 귀하

【서식 6】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장의 참가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가제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요? (이미 본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예” 체크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 니 오
2	1개월 이전까지 인위적 감원 또는 임금 체불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 니 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 사업장은 위의 1번(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2번(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내용에 따른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장 참여자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 대표 ○○○ (인)

20 년 월 일

안성시장 귀하

【서식 8】

청 구 서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 년 청년인재 고용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9】

(퇴사자 알림 공문 예시)

○○ 기업체 명

수신 안성상공회의소

제 목 20 년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자 퇴사 알림

20 년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 참여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퇴사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비고

끝.

○○ 기업체 대표자 (직인)

문서번호

접수

주 소 안성시

전화 031-

팩스 031-

담당자

메일

